

의안 번호	1759	울산광역시 중구 수입증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
----------	------	---

1. 검토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21. 5. 31.(월) 울산광역시 중구청장
- 나. 위원회 회부일자 : 2021. 5. 31.(월)
- 다. 위원회 심사일자 : 2021. 6. 11.(금)

2. 제안이유

- 행정안전부 “민원인의 권익보호를 위한 자치법규 정비계획”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현행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 정비

3. 주요내용 : 수수료 납부방법 규정 개정(안 제3조)

- (종전) 수입증지
- (개정) 수입증지, 현금, 신용카드,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방법 다양화

4. 근거법규

- 가. 「지방자치법」 제137조 및 제139조
- 나. 「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」 제29조
- 다. 「전자정부법」 제14조

5. 검토의견

- 본 개정조례안은 수수료 납부방법이 다양화됨에 따라 현실에 맞게 신용카드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·전자결제 및 현금 등의 방법으로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
- 알기 쉬운 법령 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것으로 관련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근거법규

지방자치법

- 제137조(수수료) ① 지방자치단체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위임사무가 특정인을 위한 것이면 그 사무에 대하여 수수료를 징수할 수 있다.
- ③ 제2항에 따른 수수료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수입으로 한다. 다만, 법령에 달리 정하여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.

제139조(사용료의 징수조례 등) ① 사용료·수수료 또는 분담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. 다만, 국가가 지방자치단체나 그 기관에 위임한 사무와 자치사무의 수수료 중 전국적으로 통일할 필요가 있는 수수료에 관한 사항은 다른 법령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표준금액으로 징수하되, 지방자치단체가 다른 금액으로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표준금액의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조례로 가감 조정하여 징수할 수 있다.

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

제29조(민원수수료 등의 납부방법) 행정기관의 장은 민원인의 편의를 위하여 현금·수입인지·수입증지 외의 다양한 방법으로 민원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을 납부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한다.

전자정부법

제14조(세금 등의 전자적 납부) 행정기관등의 장은 다른 법령에서 세금, 수수료, 과태료, 과징금, 범칙금, 벌금, 과료 등을 현금, 수입인지, 수입증지, 그 밖의 형태로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도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,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.